## [첨부 2]

## □ 지역인재 세부 요건

## 개념

- ☑ 지역이재 ◎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이외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(이하 "비수도권 소재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(단, 비수 도권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(예정)한 자는 제외)
  - 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

# 의 범위

- ☑ 비수도권 비수도권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  - 소재 학교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.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 학교 등의 본교
    - \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학교에 포함
    - ② 비수도권에 소재하는「고등교육법」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 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   - \* 본교와 다른 비수도권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   - \*\* 비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    - 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 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 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    - ④ 특별법으로 설치되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   - ②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충남)
    - (나)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   - ⑤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   - @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    - 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   - ※ 외국학교 및 비수도권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## 🔟 지역인재

- 비수도권 소재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- ① '비수도권 소재 학교의 범위'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자
- ②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비수

도권 소재 학교일 경우

- ②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⑤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©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❷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☞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- ⑦ 수도권 소재 학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지역인재에서 제외
- ④ 비수도권 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지역인재에서 제외

### ● 예시

- 〈 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〉
- o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
-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〈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〉
- ㅇ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 졸업 : 해당
- ㅇ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- 〈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〉
- ㅇ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o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지역인재에 해당
- 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〉
- ㅇ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ㅇ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〈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〉
- ㅇ 비수도권 소재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o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※ 다만,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지역인재에 해당 〈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〉
- o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ㅇ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- 〈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〉
- ㅇ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ㅇ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